

가정상담



통권 4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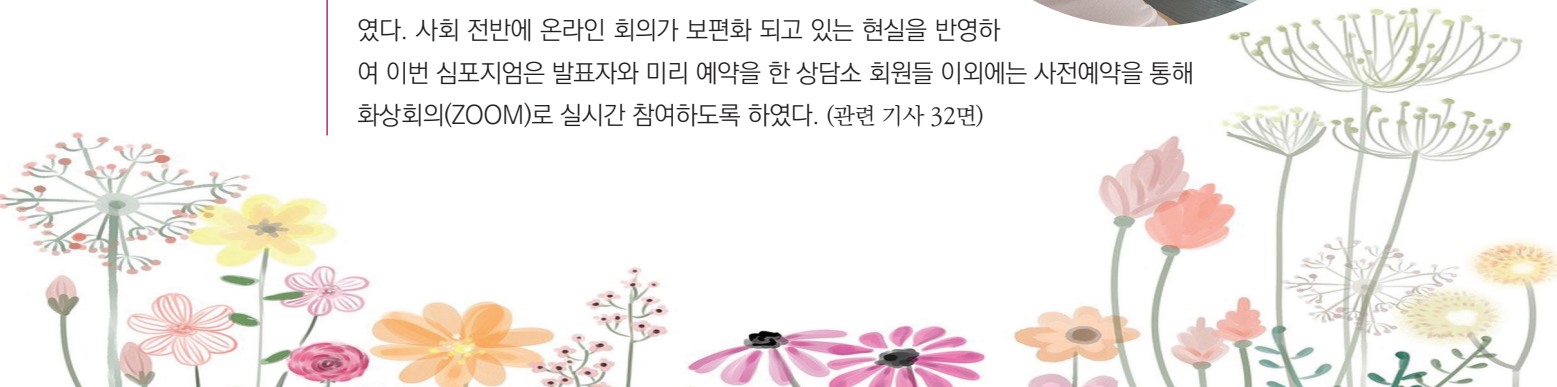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회 전반에 온라인 회의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미리 예약을 한 상담소 회원들 이외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화상회의(ZOOM)로 실시간 참여하도록 하였다. (관련 기사 32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202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①
25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26	• 가정폭력상담실
28	• 어떻게 할까요
30	• 실습소감문
31	• 좋은 책 프로보커티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5	• 소송구조

※ 결혼과 인생 - 만화일기는 작가 사정으로 쉽니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옥인동 끈끈이대나물〉





한국 사회, 지금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역설과 모순의 가족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첩 둔 남편 나라 망친다.’,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아니고 20세기, 1960년의 일입니다.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운동사 정리 과정에서 앞자리에 놓이는 관련 사진 가운데 등장하는 플래카드의 내용입니다. 1960년 7월 19일,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면서 했던 축첩반대 시위의 한 장면인데 동성동본 금혼 철폐,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등에 이어 점점 더 세밀한 부분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운동, 가족법개정운동의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급변하는 가족 - 한국전쟁 이후 21세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가족을 요약하는 이러한 말로 축첩반대 시위에서 오늘의 가족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해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대가족을 대체하며 가족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날 가족의 형태, 삶의 모습, 의식구조 전반은 더욱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모와 미성년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4인 이상 가구는 19.6%로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가 중요하게 본 한 가지 점은 한국에서 3, 40대 미혼 인구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의 증가 추세입니다. 30대 미혼 인구의 5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40대 초반 미혼에서도 이 비율은 44%가 넘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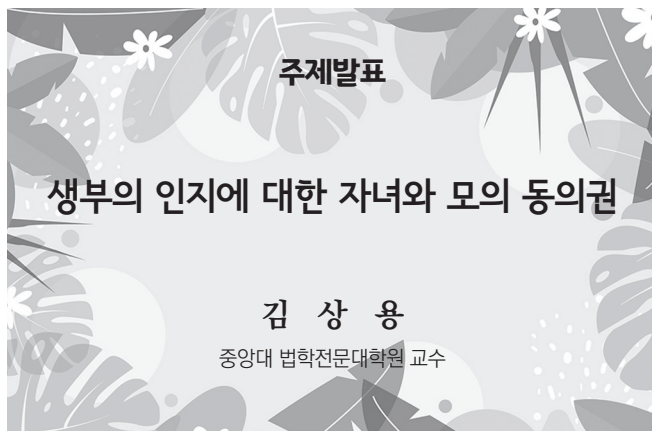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증가와 3, 40대 미혼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의 증가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면서 오늘날 한국이 처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구 문제, 사회 경제적 현실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식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도 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2002년 조사에서는 71%였는데 2018년에는 27%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부모 부양은 이제 자식만의 책임이었을 사적영역을 떠나 국가도 책임져야 하는 공적영역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은 2008년 하는 것이 좋다 44.4%,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7.7%, 반드시 해야 한다 23.6%의 순으로 그대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다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42.9%로 2016년 이후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혼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와 2012년 이후 이혼에 대한 가장 많은 인식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48.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듯이,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과 혼인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든 1인 가구는 증가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들은 고령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는 또 증가 추세에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족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파악과 지원은 물론 고령화된 가족에 대해서도 올바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보다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회에서 보이듯이 부모의 연금으로 함께 살던 자녀들이 부모의 사후 대안 없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 안에서 가족의 형태, 가치관, 의식구조는 더욱 급변하고 이러한 현실 아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그들이 이루는 사회 전체는 안정을 찾기는커녕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 가족의 해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나타난 현실을 기반으로 가족정책, 사회 전반의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용적인 충실을 기하는데 가족 전담 부처는 물론 국가 전체의 이에 대한 노력과 이해가 필요함은 백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 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I. 들어가는 말

우리 민법에서 인지(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생부뿐만 아니라 생모도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민법 제855조), 생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 모가 모자관계의 발생을 위해

서 별도로 인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인지란 생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혼인 외의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지를 할 때에는 자녀나 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지자와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생부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자가 생부라고 해도 인지가 항상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지자가 생부인 한 자녀는 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자신에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자관계의 성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지가 자녀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이 생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인지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모의 경우에는 인지에 의해서 직접적인 신분관계의 변동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과 양육 등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

*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토론문은 8월호에 게재).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에서 볼 수 있으며, 심포지엄 관련 소식은 32면 참조.

다. 인지를 하기 전에 생부가 자녀의 모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인지 후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자녀의 성·본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문에서는 우선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에 대해서 분석, 검토하고(II), 이 문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살펴본 후(III), 이를 바탕으로 생부와 모, 자녀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IV).

II. 현행법의 태도에 대한 분석과 검토

1. 현행법 규정에 대한 검토

(1) 인지제도의 본래 목적은 혼인외의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모 하여금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인지는 자녀의 출생 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는 인지를 받는 자녀(피인지자)의 연령에 제한이 없으므로, 성년자녀이든 이미 혼인한 자녀이든 관계없이 생부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성년에 이른 자녀라도 해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²⁾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생부가 뒤늦게 나타나 인지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과 불이익만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³⁾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입장에서 생부의 인지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자녀는 생부의 일방적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형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⁴⁾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⁵⁾

(2)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또 다른 방법인 입양에 있어서는 민법은 당사자인 자녀(자녀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⁶⁾ 제869조). 이에 따라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와 그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양친자관계

- 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2020, 317면. 생부가 인지를 통하여 법률상 부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양육(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면접교섭도 할 수 있게 되며, 친권자가 되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속관계도 발생한다.
- 2) 생부가 이미 혼인한 혼인외의 자(아들)를 일방적으로 인지하여 그의 성과 본이 생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인지된 자녀의 자녀까지도 성·본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사례). 이는 인지에 따른 부자관계 창설의 효과가 혼인외의 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 3)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생부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면접교섭의무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인지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으려는 의도로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4) 심지어 모가 생부의 강간에 의해서 자녀를 임신, 출산하였다고 해도 현행법상 생부의 인지를 저지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 5) 생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혈연의 진실에 따른 것이므로(즉 혈연에 따른 부자관계의 창설로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면에 치우친 것으로서 현행 민법체제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현행법체제상으로도 친생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혈연진실주의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서술하는 (2) 부분 참조.
- 6) 이하에서 민법조문은 별도로 법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예를 들어 미혼모 A가 미성년자녀 B(13세)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생부 C가 B를 입양하려면 B의 승낙과 A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⁷⁾). 양친자관계의 성립이 자녀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요건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지 역시 생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그 효과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입양과 비교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양친자관계이든 친생자관계이든 친자관계의 발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양친자관계의 성립에는 자녀와 그 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반면, 인지 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발생에는 자녀와 모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의 발생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입양과는 달리 - 혈연에 기초한 것이므로, 자녀와 모의 의사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이는 혈연에 따른 친자관계의 성립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도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존속은 혈연진실주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 역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의견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아내의 남편이 그 자녀의 부(父)로 추정되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는데(제844조), 이러한 친생추정의 효과는 아내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제846조),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승인하고(제852조)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다.⁸⁾ 부(또는 모)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면, 생부라 할지라도 자녀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혈연의 진실에 부합하는 법률상 부자관계의 형성은 가능하지 않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이와 같은 민법규정은 혈연진실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를 들어 아내가 혼외관계에서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와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생부가 인지를 할 목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모와 모의 남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중의 자녀의 경우에도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과 존속은 혈연의 진실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 역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혼인외의 자녀의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에 있어서도 혈연진실주의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인지에 따른 법률상 부자관계의 발생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생부에 의한 인지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에 대한 모나 자녀의 동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으나, 우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인지로부터 자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나 모에게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한다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인지를 걸러내는 장치로서

7) A가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B의 입양승낙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다시 부모의 지위에서 입양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제870조 제1항).

8) 또한 부나 모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하므로, 혈연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관계가 항구화된다(제847조).

9)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1집 3호, 2019, 71면 이하 참조.

기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3) 인지에 대해서 자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은 자녀를 단지 인지의 대상(또는 객체)으로 취급하는 입법자의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가 혼인외의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또한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을 할 때 사전에 자녀(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가사소송규칙 제100조),¹¹⁾ 이 규정도 아동의 인권과 복리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한 법률상 부자관계의 창설은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친권자 지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효과면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자녀나 모에게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한다면 생부가 아닌 자에 의한 허위의 인지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법 규정에 의하면 생부가 아닌 자가 심지어 모나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인지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¹²⁾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나 자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나 인지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8조)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인지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자녀와 모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자녀나 모에게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한다면 생부가 아닌 자에 의한 허위의 인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일단 인지신고가 수리된 후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인지를 할 때 사전에 자녀와 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인지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관계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부에 의한 인지이든 생부가 아닌 자에 의한 인지¹³⁾이든 모와 자녀가 그에 동의한다는 것은 인지자와 모, 자녀가 새로운 가

10) 자녀나 모에게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경우, 동의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가 생부와 의 공동양육, 친권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생부의 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V. 부분 참조.

11)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대판 2014. 2. 27, 2012므4478은 “입양신고서 기재에 필요한 양모의 본과 등록기준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입양신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담당공무원이 전산상으로 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기재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방적 신고에 의한 무효인 신분행위(성년자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신고 등) 성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수·김상용, 주석 민법(친족 3), 2016, 344면 이하 참조.

13) 외국에서는 생부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지도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프랑스, 독일 등. Helms, Die Feststellung der biologischen Abstammung, 1999, S. 66ff.).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의 인지는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다만 허위의 인지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뿐이다(대판 1992. 10. 23, 92

죽을 이루는 데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된 가족관계는 이후에도 원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결국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현행법 규정의 연혁에 대한 검토

(1)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민법과 같이 생부가 일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입법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인지에 대해서 자녀와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가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¹⁴⁾ 인지에 관한 민법 제855조는 민법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제정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생부가 자녀나 모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부의 의사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이는 부계혈통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라고 볼 수도 있다), 자녀의 복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인지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모의 의사도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정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히려 그 이전 시대인 일제강점기에는 성년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그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2)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조선민사령이 개정되면서(제4차 개정. 1922. 12. 7. 1923. 7. 1. 시행)¹⁶⁾ 인지에 관한 일본명치민법 규정(친족편 제4장 제1절 제2관 서자 및 사생자 제827조-제836조)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¹⁷⁾ 그런데 해방 이후 제정된 우리 민법과 비교하여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자녀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였다는 점이다(일본명치민법 제830조).¹⁸⁾ 이 규정은 당시 스페인민법(제133조 제1항)과 포르투갈민법(제126조)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⁹⁾ 민법수정안이유서에는 일본이 이 두 나라의 규정을 계수한

다(29399 판결). 앞의 나라들에서는 혈연의 진실에 반하는 인지라도 당사자(생부, 생모)의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인지로 보는 반면(따라서 입양의 법리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혈연의 진실에 반하는 인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전제하고,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무효행위의 전환)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4) 이는 다시 자녀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 자녀와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 모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입법례로 나누어진다. 인지에 자녀나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III. 부분 참조.
- 15) 모가 단독친권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생부가 모와 협의하지 않고 인지를 한 후 면접교섭, 친권자(양육자) 변경 등을 시도하면서 양육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모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16) 자세한 내용은 정궁식,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 117면 이하 참조.
- 17) 일본명치민법 제827조 1. 사생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인지할 수 있다. 2. 부가 인지한 사생자는 서자로 한다; 일본명치민법 제829조 1. 사생자의 인지는 호적리에 신고를 함으로써 한다. 2. 인지는 유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18) 일본명치민법 제830조 성년의 사생자는 그 승낙이 없으면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일본명치민법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성년자인 때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다(일본명치민법 제831조 1. 부는 태내(胎內)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의 승낙을 얻을 것을 요한다. 2. 부 또는 모는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성년자인 때에는 그 승낙을 얻을 것을 요한다).
- 19) 스페인민법과 포르투갈민법에는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속하고 있다. 즉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가 없으면 인지할 수 없다(스페인민법 제123조, 포르투갈 민법 제1857조).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부 또는 모가 그 사생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방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의로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볍게 사람의 신분을 좌우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제834조²⁰⁾의 규정만으로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²¹⁾ 梅謙次郎은 이 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해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에 의한 인지는 자녀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친자관계의 성립에 따른 부양의무의 발생) 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²⁾ 또한 穂積重遠은 부모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인지를 방지하고 자녀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규정이라고 평가하였다.²³⁾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일본민법이 개정될 때에도 이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문장이 다소 순화되고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이다. 현행 일본민법 제782조: 성년의 자는 그 승낙이 없으면 인지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민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구민법에서는 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인지할 수 있었는데(제830조), 민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는 친자관계가 생겨서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므로, 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를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⁴⁾

제정민법의 입법자가 그 당시까지도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었던 일본명치민법(구민법) 제830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제정민법의 입법자는 생부의 인지에 대해서 굳이 자녀나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발생시키고,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은 자녀와 모의 입장에서조차 최상의 선택이라고 전제하고, 굳이 자녀나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⁵⁾ 또한 부계

20) 일본명치민법 제834조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하여 반대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21) 民法修正案理由書, 東京博文館藏版, 1898, 106면.

22) “사생자의 인지는 부모의 의무이지만 왕왕 자(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는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수레꾼(車夫)이나 마부(馬丁) 따위가 이를 인지하여 자기의 자라고 하는 때에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친자관계가 발생한 이상은 부양의무 기타 자를 위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 후 바로 인지하지 않고 성장한 다음에 인지하는 때에는 자에 대하여 충분히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서 친자관계에서 생긴 이익을 얻고자 하더라도 법률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는 그 인지를 거부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미성년의 자는 아직 자기의 이해를 교량할 충분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 또는 모의 생각만으로 인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성년의 자는 그 승낙이 없으면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梅謙次郎, 民法要義卷之四 親族編, 有斐閣書房, 1910, 262면.

23) 穂積重遠, 親族法, 岩波書店, 1933, 451면. “양육교육의 돌봄이 필요한 동안에는 모르는 척하거나 인지를 거부하다가 한몫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거나 되려고 할 때 내 자식으로 하자라는 인지자의 이기적인 행동(手前勝手)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피인지자의 의사인격(意思人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정당한 규정이다.”

24) 김주수, 주석 친족·상속법, 1993, 325면; 같은 의견 한봉희, 가족법, 2007, 200면.

25) 민법제정과정에서 혼인외의 자의 부가입적(父家入籍)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부(父)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정일형 의원)에 대해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장경근은 “아내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버지의 호적에 넣을 수 있다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1957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법안 제2독회. 제26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49호 16면). 그는 그 이유로 ‘서자를 아버지의 호적에 못 넣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서자로 하여금) 비굴한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혈통에 따른 법률상 부자관계의 창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므로, 생부이면서도 자녀나 모의 반대에 부딪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²⁶⁾(제정민법의 입법자가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후(戰後) 일본민법에서 삭제된 호주제를 우리 민법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사실만으로도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III. 외국의 입법례 -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한편 외국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인지에 대해서 자녀나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독일민법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독일민법규정

(1) 1900년 독일제정민법

1900년부터 시행된 독일제정민법²⁷⁾은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1900년 독일민법 제1589조 제2항).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인지제도 역시 존재의 이유가 없었다(따라서 독일제정민법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인지제도를 알지 못했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혼인외의 자와 생부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생부는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생부는 혼인외의 자를 부담으로 느낄 뿐이며, 그의 복리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들 사이에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한 사실적·윤리적인 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⁸⁾

이와 같이 독일제정민법은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부자관계를 인정하였다(1900년 독일민법 제1708조-제1714조, 제1716조).²⁹⁾ 따라서 당시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이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부자관계가 확정되었을 뿐이다.³⁰⁾ 부양의무에 관하여만 부자관계를 인정한 배경에는, 혼인외의 자가

26)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자 친족상속편 초안을 작성한 김병로 대법원장은 1957년 11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법안 제1독회에서 부계혈통주의가 가족제도의 근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생리학과도 일치하는 그 부계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입니다. 뭐 제사 지내는 것이 가족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의 골수는 그 부계계통…… 원래 부모의 애비의 몸에서 떨어진 분자니까 그 분자의 종자를 계승한다는 것이 소위 부계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6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0호 11면.

27) Bürgerliches Gesetzbuch vom 18. August 1896.

28)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제정민법의 입법자는 프랑스민법에서와 같은 인지제도(인지에 의하여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의 도입을 명백히 거부하였다. 만약 예외적으로 생부와 모, 혼인외의 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면, 준정이나 입양에 의해서 인지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Motive IV, S. 851ff.

29) 이외에도 모는 생부에 대하여 출산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출산 직후 6개월간의 부양료(모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1900년 독일민법 제1715조, 제1716조). 또한 독일제정민법은 준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1900년 독일민법 제1719조), 이러한 한도에서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 1900년 독일민법 제1717조에 의하면 임신기간 중에 자녀의 모와 동침한 남자가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모가 다른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졌고, 자녀가 이러한 관계에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배제할 수

생부에 대해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면, 혼인외의 자녀의 부양 문제가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었다.³¹⁾

(2)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개정논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제기되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혼인외의 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당시 사회에서 혼인외의 자의 사망률은 혼인중의 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³²⁾ 이와 같이 높은 사망률은 혼인외의 자의 모의 대다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

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1921년에 개최된 제32차 독일법률가대회에서는 임의인지 또는 소송을 통하여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³⁾ 1922년 개정안³⁴⁾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모와 동침한 적이 있고 자녀의 동의³⁵⁾를 받아 인지를 한 사람을 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부자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을 통하여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³⁶⁾ 1925년 개정안과 1929년 개정안 역시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성립에 관하여는 1922년 개정안과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였다.³⁷⁾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개정논의는 아무런 성과를 거

없는 때에는 모와 동침한 남자의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exceptio plurium concubentium: Defense of the father of an illegitimate child, that the mother had conversed with several men in the time of conception).

31) Motive IV, S, 868ff.

32) Schubert, Die Projekte der Weimarer Republik zur Reform des Nichtehelichen-, des Adoptions- und des Ehescheidungsrechts, 1986, S. 37.

33) 나아가 임신 중에 모가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자녀의 생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모와 동침한 남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료채무를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이 제안은 1925년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제안이 혼인외의 자의 부양청구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Deichfuß, Abstammungsrecht und Biologie, 1991, S. 21.

34)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uneheliche Kinder und die Annahme an Kindesstatt.

35) 1922년 개정안 제1717조a. 인지가 자녀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법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에게도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당시 개정안은 모의 동의는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Brock, Die Prinzipien des deutschen Abstammungsrechts, 2020, S. 129.

36) 1922년 개정안 제1717조.

37) 1925년 개정안(제1717조)과 1929년 개정안(제1705조a: Als Vater des unehelichen Kindes gilt, 1. wer die Vaterschaft gegenüber dem Vormundschaftsgerichte nach der Geburt des Kindes mit dessen Zustimmung anerkannt hat, 2. wer auf eine gegen ihn gerichtete Klage des Kindes rechtskräftig als Vater festgestellt ist)도 1922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임의 인지와 부자관계확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Schubert, Die Projekte der Weimarer Republik zur Reform des Nichtehelichen-, des Adoptions- und des Ehescheidungsrechts, 1986, S. 129, 166, 364. 또한 1925년 개정안과 1929년 개정안은 1922년 개정안과 같이 혼인외의 자를 인지나 부자관계확정소송을 통해 법률상 부가 확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에 대해서만 자녀의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후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남자로 지칭하였다(인지나 재판에 의해서 부자관계가 창설되지 않았으나,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생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929년 개정안은, 모의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다수여서 자녀의 생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먼저 부양료청구를 받은 자가 부양료채무를 이행하고 그 외의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Deichfuß, Abstammung und Biologie, 1991, S. 25.

두지 못하였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정논의

(3) 나치시대의 개정논의

나치시대에도 혼인외의 자에 관한 법개정 논의는 지속되었다. 이 논의는 주로 독일법 아카데미의 가족법위원회³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뢰스머(F. Mößmer)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취합하여 작성한 개정요강에는 부자관계는 항상 직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겨있었다(부자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혈액형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다).³⁹⁾ 이로써 위원회는 바이마르 시대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임의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창설 가능성과 단절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생물학적인 친족관계와 일치시키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서 생물학적 혈통이 강조되었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추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혼외자의 모에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생부의 이름을 말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히틀러의 명령과 충돌하였기 때문에,⁴⁰⁾ 끝내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⁴¹⁾ 나치시대에는 혼인외의 자에 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정시도는 히틀러의 의지와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1962년 개최된 제44차 독일법률가대회에서는 혼인외의 자에 대한 법개정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뢰머(G. Boehmer)와 보쉬(F. W. Bosch)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뢰머는 임의인지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창설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직권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즉 생부와 혼인외의 자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반드시 생물학적인 혈연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아동청이나 후견법원이 인지의 진실여부(인지가 혈연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인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⁴²⁾ 뢰머는 모나 자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혈연의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인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혈연진실주의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뢰머의 경직된 의견은 그 후에 이어진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쉬는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임의인지와 재판에 의한 부자관계의 창설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⁴³⁾ 보쉬는 허위의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 창설에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⁴⁴⁾: 인지가 혈연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통상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며, 실질적인 부자관

38) 독일법 아카데미(Akademie für Deutsches Recht)는 1933년에 설립된 학술기관으로 법무부와 내무부의 감독을 받았다. 독일법 아카데미의 가족법위원회에는 가족법에 관심을 가진 나치조직의 대표뿐만 아니라 교수, 고위법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39) Leitsätze von Ferdinand Mößmer zur Neugestaltung des Rechts der Ehelichkeit und Unehelichkeit von Kindern, Schubert(Hrsg.), Akademie für Deutsches Recht 1933-1945, Protokolle der Ausschüsse, Band III, 2, Familienrechtsausschuß, 1989, S. 401.

40) 히틀러의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라는 개인사(個人史)에서 비롯된 가치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Deichfuß, Abstammungsrecht und Biologie, 1991, S. 39.

41) 가족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1940년에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히틀러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Schubert, Der Entwurf eines Nichtehechengesetzes vom Juli 1940 und seine Ablehnung durch Hitler, FamRZ 1984, 1/4ff.

42) Boehmer, Verhandlungen des 44. DJT, Bd. I, 1. Teil, Heft A, S. 113ff. 이런 의미에서 인지의 의사표시는 하나의 증거방법("nur ein Beweismittel für die wirkliche blutmäßige Abstammung")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뢰머의 의견이었다.

43) 이와 같은 보쉬의 의견은 바이마르 시대의 개정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Bosch, Verhandlungen des 44. DJT, Bd. I, 1. Teil, Heft B, S. 31("Wie die langjährigen Erfahrungen in Frankreich und den

계의 형성과 발전은 생물학적인 혈연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 자녀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인지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자녀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정에서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혈연의 진실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보쉬의 의견은 제44차 법률가대회에서 압도적인 동의를 받았으며, 1969년 법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1969년 혼인외의 자에 관한 법개정

1969년에 혼인외의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⁴⁵⁾이 공포되어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생부와 혼인외의 자는 친족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던 1900

년 독일제정민법 제1589조 제2항⁴⁶⁾은 폐지되었으며, 임의 인지 또는 재판을 통한 법률상 부자관계의 창설이 가능하게 되었다(이로써 혼인외의 자의 생부도 처음으로 법률상 부모의 개념에 포함되었다).⁴⁷⁾

생부가 인지를 할 때에는 자녀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는데,⁴⁸⁾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동의하고, 14세에 이른 자녀는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었다(다만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⁴⁹⁾ 인지는 자녀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자녀의 동의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⁵⁰⁾

인지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였으므로,⁵¹⁾ 인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도 아동청이 하였다.⁵²⁾ 인지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생

Niederlanden, wo eine Nachprüfung der Richtigkeit des Anerkennnisses von Amts wegen nicht vorgenommen wird, beweisen, ist die fehlende" Inquisition "hier im Regelfall viel besser als eine Amtserforschung, ein Eindringen der Behörden in Intimverhältnisse, die sich mit Zustimmung aller Beteiligten zur Ordnung hin entwickeln."), 80ff.

45) Das Gesetz über die rechtliche Stellung nichtehelicher Kinder vom 19. 8. 1969.

46) 1900년 독일민법 제1589조 제2항: Ein uneheliches Kind und dessen Vater gelten nicht als verwandt.

47) 1969년 독일민법 제1600조a

48) 1969년 독일민법 제1600조c 제1항. 반면에 모의 동의는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인지의 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며, 이외에 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모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경우, 모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는 인지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에게는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지에 대한 취소권만을 부여한 것이다(1969년 독일민법 제1600조g). BT-Drucks. V/2370, S. 28; 모에게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Göppinger, Betrachtungen zum Referentenentwurf eines Unehelichengesetzes, FamRZ 1966, 418/421; Lange, Ein Reformvorschlag zum Unehelichenrecht, JZ 1966, 727/729.

49) 1969년 독일민법 제1706조 제1호, 제1709조.

50)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서 자녀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Schwab, Familienrecht, 6. Aufl., 1991, Rz. 571.

51) 1969년 독일민법 제1706조.

52) 「혼인외의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외의 자의 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그 전에는 혼인외의 자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후견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혼인외의 자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인지, 생부에 대한 부양청구 등)에 있어서는 기관후견인(지역의 아동청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이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기관후견인제도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으나, 1998년 7월 1일 개정친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용,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I, 2002, 119면 이하 참조.

부에게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누적된 범죄경력, 과다한 채무, 마약중독, 알콜중독 그 밖에 자녀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인격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아동청은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⁵³⁾ 반면에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를 하려는 경우에도 아동청은 그 인지가 자녀의 복리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인지자와 모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기로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던 경우).⁵⁴⁾

1969년 혼인외의 자에 관한 개정법은 기본틀에 있어서

바이마르 시대의 논의를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1997년 친자법개정

1997년 친자법개정⁵⁵⁾에 의해서 모의 동의가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되었다.⁵⁶⁾ 모도 인지에 의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 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전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지를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⁷⁾

인지에 대한 모의 동의권이 규정되면서 자녀의 동의 요

53) Deichfuß, Abstammungsrecht und Biologie, 1991, S. 63f. 여기서 생부의 인지를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막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혈연의 진실에 따른 부자관계의 창설을 저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지에 있어서 혈연의 진실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1969년 혼인외의 자에 대한 개정법은 인지에 있어서 혈연의 진실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인지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1969년 개정법이 혈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인지를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 이유도 자녀의 복리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BT-Drucks. V/2370, S. 30). 생부가 아닌 자가 인지를 할 때에는 보통 자녀의 모와 혼인한 다음 자녀를 함께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는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혈연과 일치하지 않는 인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BT-Drucks. V/2370, S. 25). 그리고 생부가 아닌 자가 이와 달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런 때에는 자녀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인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54) 이런 의미에서 아동청의 임무는 혈연의 진실에 반하는 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혈연진실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청은 인지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Frank, Die wissentlich falsche Vaterschaftsanerkennung aus zivil- und strafrechtlicher Sicht, ZBlJugR 1972, 267ff. 271(“Der Amtspfleger hat vielmehr abzuwägen, ob nicht möglicherweise doch die Zustimmung zur falschen Vaterschaftsanerkennung dem Wohl des Kindes am besten dient.”)

55) Gesetz zur Reform des Kindschaftsrechts von 16. 12. 1997(1998년 7월 1일 시행).

56) 독일민법 제1595조 제1항. 다만 친권 중에서 인지에 관한 부분이 모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독일민법 제1595조 제2항. 예를 들어 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이 경우 모의 친권은 정지된다. 독일민법 제1673조 제2항 1문), 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인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지만, 이에 더하여 자녀의 동의도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rank, Die Zustimmung des Kindes zur Vaterschaftsanerkennung in den Fällen des § 1595 Abs. 2 BGB, StAZ, 2013, 133ff. 참조). 이에 따라 성년의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자녀의 동의 이외에 모의 동의도 필요하다(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모는 더 이상 친권자가 아니지만, 모의 신분에서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BT-Drucks. 13/4899, S. 84). 따라서 생부가 성년인 자녀와 협의하여 인지하려는 때에도 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창설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생부는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부자관계확정소송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독일민법 제1600조d).

57) BT-Drucks. 13/4899, S. 54.

건은 삭제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혼인외의 자를 위한 기관후견인제도의 폐지가 자리잡고 있었다.⁵⁸⁾ 1997년 개정친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혼인외의 자가 출생하면 지역의 아동청이 자동으로 기관후견인이 되어 특정한 사안(인지, 생부에 대한 부양청구 등)에 있어서 자녀를 대리하였다.⁵⁹⁾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동청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었으며, 모의 친권은 그 범위에서 제약을 받았다(예를 들어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 인지에 대한 자녀의 동의는 모가 대리할 수 없었으며, 아동청이 대리하였다). 1997년 개정친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아동청에 의한 기관후견인제도가 폐지되면서 혼인외의 자의 모에게도 제한없는 친권이 인정되었으므로,⁶⁰⁾ 이제 모는 친권자로서 인지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직접 자녀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 친자법개정에 의해서 모의 동의가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되면서 모는 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의 동의를 존속시킨다면 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즉 자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이중의 동의가 된다는 것이 당시 입법자의 인식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에 대한 자녀의 동의는 모의 동의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독일학계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주된 요지는 모에게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동의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지는 (모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신분·가족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에 의한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⁶¹⁾ 이러한 이유에서 개정과정에서 인지에 대한 모의 동의권과 자녀의 동의권을 함께 규정한 법안도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⁶²⁾ 종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독일민법은 인지의 요건으로 모의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모)의 동의를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1) 자녀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입법례

스페인민법에 따르면 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⁶³⁾ 이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려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58) Gesetz zur Abschaffung der gesetzlichen Amtspflegschaft und Neuordnung des Rechts der Beistandschaft von 4. 12. 1997(1998년 7월 1일 시행).

59) 기관후견인제도의 취지와 연혁에 대해서는 김상용,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I, 2002, 119면 이하 참조.

60) 1997년 독일민법 제1626조a 제2항. BT-Drucks. 13/4899, S. 54.

61) Ramm, Kindschaftsrechtsreform? JZ 1996, 982/987; Richter, Soll die Amtspflegschaft abgeschafft werden?, FamRZ 1994, 8; Gaul, Die Neuregelung des Abstammungsrechts durch das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in: Schwab(Hrsg.), Das neue Familienrecht, 1998, S. 76; 국내에서 이 문제를 다룬 문헌으로는 이준영, 임의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확정,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619면 이하 참조.

62) SPD-Entwurf, BT-Drucks. 13/1752, S. 3; BT-Drucks. 12/4024, FamRZ 1993, 278/279(B. I. 5. Zur Anerkennung ist die Zustimmung des Kindes und seiner Mutter erforderlich).

63) 스페인민법 제123조. 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야 한다.⁶⁴⁾ 미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일반적인 경우 자녀의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⁶⁵⁾ 그러나 출생등록기간(자녀의 출생 후 30일) 내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인지가 가능하다.⁶⁶⁾ 자녀의 출생 직후에 이루어지는 인지는 그만큼 신뢰성과 진실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지에 대해서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⁶⁷⁾ 이에 대해서 인지자(부)가 인지의 효력 확인을 청구하면, 법원은 인지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인지 허가의 심판을 하게 된다(법원이 인지의 허가를 하면 그 인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포르투갈민법에도 스페인민법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 포르투갈민법 제1857조에 의하면 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⁶⁸⁾

핀란드에서도 15세 이상인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⁶⁹⁾

(2)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입법례

벨기에민법에 따르면 인지를 할 때에는 자녀와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자녀가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부자관계의 창설은 가능하지 않다(이러한 의미에서 성년자녀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⁷⁰⁾ 미성년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외에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⁷¹⁾ 미성년자녀를 인지하려는 사람이 인지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법관이 인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인지를 하려는 사람이 생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생부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인지청구를 기각한다. 그 반대의 경우(즉 인지를 하려는 사람이 생부인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인지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청구를 기각한다.⁷²⁾

네덜란드민법도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⁷³⁾ 인지를 할 때 자녀가 16세 미만인 때에는 모

64) 스페인민법 제126조. 따라서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다.

65) 스페인민법 제124조 제1항.

66) 스페인민법 제124조 제2항 1문.

67) 스페인민법 제124조 제2항 2문.

68) Albuquerque, Länderbericht Portugal, in: Bergmann ua, Internationales Ehe-und Kindschaftsrecht, Stand: 11. 5. 2009, S. 85; 이러한 스페인민법과 포르투갈민법의 태도는 일본명치민법에 계수되었으며, 현행일본민법에 온존되어 있다(앞의 II. 2. 부분 참조).

69) 핀란드 부성법(父性法) 제16조 제1항. Pöpkén/Huhtala, Finnland,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tand: Juni 2016, Rn. 27; 스웨덴에서는 인지를 할 때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스웨덴친자법 제1장 제4조). Giesen, Länderbericht Schweden, in: Bergmann ua, Internationales Ehe-und Kindschaftsrecht, Stand: 1. 7. 2013, S. 65.

70) 벨기에민법 제329조bis 제1항.

71) 벨기에민법 제329조bis 제2항 1문, 2문. Pintens, Die Abstammung im belgischen Recht, in: Spickhoff/Schwab/Henrich/Gottwald(Hrsg.), Streit um die Abstammung, 2007, S. 129.

72) 벨기에민법 제329조bis 제2항 4문. 모를 강간한 자의 인지청구는 언제나 기각된다(벨기에민법 제329조bis 제2항 5문).

73) Jörn Vinnen, Niederlande,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tand: März 2017, Rn. 25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⁷⁴⁾ 또한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⁷⁵⁾ 따라서 자녀가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를 할 때 자녀와 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자녀나 모가 인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생부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인지가 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⁷⁶⁾

이탈리아민법에 의하면 인지를 할 때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⁷⁷⁾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를 할 때 모⁷⁸⁾의 동의가 필요하다.⁷⁹⁾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인지를 하려는 자의 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⁸⁰⁾

(3)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입법례

그리스민법에 의하면 인지를 할 때에는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⁸¹⁾ 자녀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인지에 대한 동의를 갖지 못한다(다만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소권만이 인정될 뿐이다).⁸²⁾

덴마크에서도 인지를 하려면 인지자와 모가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공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⁸³⁾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부와 모는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을 갖게 된다.⁸⁴⁾

(4)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입법례

우리나라와 같이 인지를 할 때 자녀와 모의 동의를 필요

74) 네덜란드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호.

75) 네덜란드민법 제204조 제1항 제4호.

76) 네덜란드민법 제204조 제3항. ① 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인지에 의해서 이러한 안정된 관계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인지가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부의 청구는 기각된다. Breemhaar, Streit um die Abstammung im niederländischen Recht, in: Spickhoff/Schwab/Henrich/Gottwald(Hrsg.), Streit um die Abstammung, 2007, S. 157f.

77) 이탈리아민법 제250조 제2항. 재판에 의해서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14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이탈리아민법 제273조 제2항).

78)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인지를 한 부모의 일방이다. 이탈리아민법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와 모 사이의 모자관계도 인지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이탈리아민법 제250조 제1항, 제261조. Deutsches Institut für Jugendhilfe und Familienrecht e. V., Umgangsrechte des biologischen Vaters – Europäische Staaten in Vergleich, 2010, S. 80).

79) 이탈리아민법 제250조 제3항.

80) 이탈리아민법 제250조 제4항. 이외에 헝가리민법에서도 인지의 요건으로 모와 자녀(14세 이상인 경우)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모 또는 자녀가 사망했거나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헝가리민법 제4장 제101조 제5항. Szabo, Ungarn,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tand: Mai 2019, Rn. 25.

81) 그리스민법 제1475조 제1항. 모가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 없이도 인지가 가능하다. 모가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부는 소송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그리스민법 제1479조 제1항).

82) 그리스민법 제1477조.

83) 덴마크친자법 제14조 제1항. Ring/Olsen-Ring, Eherecht in Dänemark, in: Süß/Ring, Eherecht in Europa, 2020, Rn. 178.

84) 이외에 슬로베니아에서도 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지가 가능하다.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생부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Nemet, Slowenien,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tand: August 2017, Rn. 25-27; 체코에서도 인지를 하려는 사람은 모와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모의 의사에 반하는 인지는 가능하지 않다. Frimmel, Tschechien,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tand: Juli 2018, Rn. 27.

로 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스위스,⁸⁵⁾ 오스트리아,⁸⁶⁾). 자녀와 모에게는 인지의 취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⁸⁷⁾

(5) 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다수 외국의 입법례는 인지의 요건으로 사전에 일정한 사람(자녀, 모, 또는 자녀와 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상당수에 이르는데(독일,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등), 일반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일정한 연령(네덜란드: 16세, 이탈리아: 14세, 벨기에: 12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독일과 같이 자녀가 성년에 달한 이후에도 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 자녀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적지 않은데, 미성년자인 때에도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

며(벨기에, 네덜란드: 12세, 이탈리아: 14세), 자녀가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부자관계의 창설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벨기에, 일본에서는 성년자녀에게, 이탈리아에서는 14세 이상의 자녀에게 인지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이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인지를 할 때 아무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스페인에서는 자녀의 출생 후 30일 내에는 모의 동의 없이도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인지를 할 때 모나 자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자녀가 성년자이든 이미 혼인한 상태이든 묻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민법 규정은 우리민법의 인지에 관한 규정과 가장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나 모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지 않는 입법례에서는 인지의 효력 발생 후에 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지를 하려는 사람이 인지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법례가 나뉜다. 법원으로부터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장을 받아서 인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 이탈리아⁸⁸⁾), 법원에 부

85) 스위스민법 제260조 제1항. 스위스민법 제정 과정에서 인지의 요건으로 모(또는 자녀)의 동의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나(Protokolle der Verhandlungen der grossen Expertenkommission 1901-1903, Art. 331. 당시 전문가위원회 위원이었던 Burckhardt는 모(또는 자녀의 후견인)와 성년자녀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의 동의 거부에 따른 인지의 지연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는 후견청이 모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전문가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그 후의 심의과정에서 폐기되었다. Berner Kommentar, Materialien zum Zivilgesetzbuch, Band III, 2013, S. 381f.),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모나 자녀(자녀의 사망 후에는 그 직계비속)는 인지의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인지자가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조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가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인지가 자녀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1907년 스위스민법 제305조 제1항). 한편 1907년 스위스제정민법은 생부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생부의 부)에 의한 인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는데(1907년 스위스민법 제303조 제1항), 이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전례가 없는 유일한 입법례였다. 이 규정은 1976년 개정 시 삭제되었는데, 실무상으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지의 일신전속적 성격에도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Berner Kommentar, Band III, 1984. Art. 260, S. 256).

86) 오스트리아민법 제145조.

87) 스위스민법에 의하면 자녀와 모 이외에도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인지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스위스민법 제260조a). 오스트리아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모는 법원에 대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오스트리아민법 제146조 제1항). 모나 자녀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인지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인지자가 생부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스트리아민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88)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탈리아민법에 따르면 인지를 할 때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자녀의 동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될 수 없다.

자관계확정(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부자관계창설)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서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독일, 핀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⁸⁹⁾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에서는 동의권자인 모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는지(또는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략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독일에서는 동의권자인 모가 사망한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서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밖에 없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사회복지청의 허가를 받아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한다. 그리스에서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무런 동의 없이도 인지가 가능하다.

IV. 현행법 규정에 대한 대안의 제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다수 외국의 입법례는 인지의 요건으로서 자녀나 모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과 같이 인지를 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례는 예외에 속한다. 물론 자녀나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 민법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인지에 관한 규정이 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인지를 할 때 사전에 자녀나 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지가 자녀와 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지에 의해서 인지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자녀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분·가족관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발생이 항상 자녀의 복리 실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로 인하여 성립하는 부자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아무 교류가 없었고, 부모로서의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생부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인지에 의한 부계혈통의 법적 실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추종한 결과로 보이는데, 민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부계혈통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자녀의 복리가 중시되는 오늘날의 가족법체제와는 더 이상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자녀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현행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⁹⁰⁾ 구체적으로는 입양규정에 준하여 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에 대한 동의를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동意的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⁹¹⁾에는 인지를 하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

89) 스위스와 같이 자녀나 모의 동의 없이 생부가 일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굳이 재판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창설할 이유가 없으므로, 생부에게 부자관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자관계확정의 소(우리의 인지청구의 소에 해당)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와 모에게만 인정된다(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민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90) 이준영, 임의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확정,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622면 이하; 반대의견 주해친족법(권재문 집필부분), 618면 이하.

91) ① 자녀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②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①의 경우뿐만 아니라 ②의 경우에 도 법원은 청구에 의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것이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인지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만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녀에게 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13세에 이른 자녀⁹²⁾가 인지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인지에 대한 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생부는 먼저 자녀와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쌓은 후에 자녀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⁹³⁾

한편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발생은 모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가 생부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갑자기 생부가 나타나서 인지를 한다면 모와 자녀로 구성된 안정된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민법에 따르면 인지자가 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인지를 하기 전에 모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자녀,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고, 법률상 부의 신분을 가지게 된 인지자는 친권자변경 또는 공동친권을 요구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개입할 수도 있다. 생부가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동기에서 인지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만약 그렇다면 모와

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모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겨줄 수도 있다(예를 들어 생부에게 과다한 채무, 누적된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모에게도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⁹⁴⁾ 다만 모의 동의권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지를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동기, 인지가 자녀와 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지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만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불명⁹⁵⁾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녀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자녀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지를 할 수 있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동의(이 경우 자녀는 법

92) 이탈리아민법은 2012/2013년 개정을 통하여 자녀가 인지에 대해서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

93)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인지를 하려는 동기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자녀와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녀의 동의를 받아 인지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94) 모가 자녀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모의 신분에서 또 다시 동의를 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이중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되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모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중 동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제8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실제로 있어서 혼인외의 자의 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 것이다(예를 들어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미성년자인 미혼모가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이 경우는 친권대행의 문제가 된다) 등).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모에게는 인지에 대한 동의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제870조 제1항 제2호 참조).

95) 우리나라에서는 모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생부(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생부가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자녀와 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참조).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다)를 받아서 인지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인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⁹⁶⁾ 현행민법상 입양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870조 제1항 제3호 참조).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나 모의 동의를 규정하지 않는 입법례(우리 민법, 스위스민법)에서는 생부가 아닌 사람도 사전에 아무런 심사를 받지 않고 인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인지를 할 때 국가기관이 인지자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례에서는 허위의 인지에 대비하여 자녀나 모 등이 인지취소의 소(스위스민법 제260조a.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서술한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체계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허위의 인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인지가 혈연관계에 기초한 경우(즉 허위의 인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 둘째, 허위의 인지가 이루어진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녀와 모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할 뿐 아

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인지를 하기 전에 자녀나 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이와 같이 불필요한 소모와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한 경우에도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부로 기록되므로, 인지무효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생부도 임의인지를 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인지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생부에 대해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고,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와 모의 동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⁹⁷⁾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인지를 어렵게 하고 생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까지 생부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던 규정체계를 자녀와 모의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인지를 할 때 자녀나 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인지자와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96) 다만 자녀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모가 사망하였으나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소재불명이어서 사실상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모가 존재하므로 친권자가 있다고 보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결 2017. 9. 26, 2017스561. 원심 대구가정법원 2017. 5. 29. 2016브1037 결정. 이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 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 중앙법학 제19집 제4호, 2017, 223면 이하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어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지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후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1년 내)에는 모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스페인민법은 출생신고기간(출생 후 30일) 내에 이루어지는 인지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면제한다. 물론 이 규정은 모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벨기에민법은 모가 사망한 경우 아무 동의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법정대리인과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벨기에민법 제329조bis 제3항)).

97) 다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언에 의한 인지(스페인민법 제124조 제2항 참조), 생부(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이 경우 출생신고에 의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동의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생부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자가 생부라고 해도 인지가 항상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지자가 생부인 한 자녀는 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자신에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자관계의 성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지가 자녀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의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의 경우에는 인지에 의해서 직접적인 신분관계의 변동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과 양육 등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인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를 하기 전에 생부가 자녀의 모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인지 후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자녀의 성·본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의 요건으로 자녀와 모의 동의를 규정한다면 자녀나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지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인지를 할 수 없다면, 이는 인지에 대한 동의권을 도입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부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심판을 할 때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가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일정한 연령(예를 들어 13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인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될 터인데, 이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하여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스스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자녀(예를 들어 13세 이상)가 인지의 동의를 거부한다면, 어떤 다른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서도 인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지를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를 원하는 생부는 우선 자녀와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녀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 인지란 생부의 의사에 따라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를 법적인 부자관계로 형성시키는 행위이며, 그 유일한 기준은 혈연진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혈연의 진실 외에 자녀의 복리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민법 제정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부계혈통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부계혈통중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오늘날의 가족법체제와는 더 이상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생부로서는 인지가 다소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까지 생부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던 규정체계를 자녀와 모의 복리를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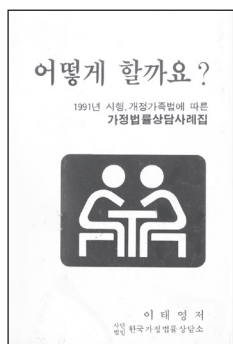
인지는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이지만, 그 영향은 부자관계를 넘어서 부와 모의 관계에까지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친권, 양육, 면접교섭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와 모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협력과 교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인지를 한 생부와 자녀 사이에 형식적인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고, 부와 모 사이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사자인 생부, 모, 자녀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는 당사자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법개정과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을 위해 (2)

1991년 1월부터 가족법 개정을 위한 홍보 ①



1977년 발행한 상담사례집



1991년 개정 발행한 상담사례집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담소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개정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사업으로 2월 1일 열린 첫 시민 공개강좌에서 ‘가족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 개정가족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김숙자 부소장이 강의했으며, 7월에는 최명근 교수(서울 시립대)의 강의로 ‘개정가족법과 세법의 개정방향’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6월에는 가족법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가족법 개정에 따른 법률상식’ 팸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이 팸플릿은 약혼·결혼·사실혼·이혼·친생자·양자·호주승계·재산상속·유언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정리

한편 9월 20일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27차 전국여성대회에서 가족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1991년에는 개정가족법의 내용을 담아 1977년 발행한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의 개정판을 발행했으며, 5월 31일에는 서울역 광장과 강남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두 곳에서 개정가족법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가족법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날 캠페인은 많은 보도진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개정가족법에 관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즉석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개정가족법의 효율적인



1991년 발행한 법률상식 브로슈어

홍보를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상담위원들이 KBS 라디오 ‘황인용·강부자입니다’에 출연하여 가족법에 관한 법률상식을 전하고 전화 및 서신상담을 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1991년 25만부를 배포한 홍보 팸플릿을 ‘알아두어야 할 새 가족법 상식’이란 제목으로 바꾸고 다시 10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집단상담 통한 문제의 객관화가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해

사건번호 2019버1***폭행 / 2019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4회 등 17회

상담기간

2019. 10. 24. ~ 2020. 6. 30.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9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3남(18세, 13세, 9세)이 있다. 부부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처부모 건물의 1층에서 살고 있다. 오랜 기간 처부모와 한 건물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처부모가 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다. 남편은 처부모의 기질이 강하여 처부모의 의향대로 자기 부부의 스케줄을 조절하거나 주말이면 처부모 집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로 심적 부담을 심하게 느껴왔다. 급기야 2019년 4월경부터 처부모가 사는 집에 가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6월 사건 당일, 부부는 장을 본 물건을 자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며 손으로 아내의 머리와 뺨을 2회 때리고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하여 남편의 뺨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부부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남편과 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매우 힘들어하였다. 특히 장녀의 입장에서 그동안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등 어려운 일을 감당해주었는데 부모가 연로한 시점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남편의 부정적인 감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방도를 찾게 되기를 바랐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고, 남편은 처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다.

남편은 집단상담에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자신의 문제는 너무 사소한 것일 수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수용가능 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된 집단상담에 다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본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후 사고 및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 '남편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남편도 알게 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데, 바로 이 점이 부부의 가장

큰 변화이다.

상담기간 중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남편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10점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충전함으로써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6점, 현재는 9점으로 평가하고, 모자라는 1점은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 등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고 하였다. 처가와와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상호 수용적인 태도로 전환되었기에 부부관계는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2019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4회, 전화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6회 등 28회

상담기간

2019. 11. 22. ~ 2020. 6.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42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43세, 41세)가 있다. 자녀 모두 결혼하였다. 행위자는 장남으로 1998년 아버지 별세 후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여 모시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맘머느리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불만으로 여겨왔다. 2019년 8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생에게 가정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부싸움에 6개월이나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상담기간 내내 불평을 하였고, 상담자는 그 때마다 가

정폭력처벌법 및 보호처분의 의미를 반복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초상담시 부부는 충돌하지 않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재건축 예정인 별도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 부부가 충돌하는 일은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는데 결혼기간 중 20년을 베트남에서 근무하여 피해자와 별거기간이 길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맘머느리로서 시가식구들에게 잘하지 못하였고, 가사도 잘하지 못하는 것 등을 갈등요인으로, 피해자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가식구를 비교하며 무시, 모욕하고 소리 지르며 반찬투정 하는 것 등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피해자는 부부상담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지만, 행위자는 피해자와 같이 상담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부를 분리하여 개별상담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행위자는 약속한 상담일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성격검사서 상대방의 정서를 고려할 점이 유념사항으로 제시되어 이 점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부부는 상담 기간 중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호주에 사는 딸집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의 언행이 부드러워졌음을 딸이 인정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처분기간 중 행위자의 폭행이 재발되지 않았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비난, 무시하는 태도가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하고 마이너스 점수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하며 현재 상태를 줄혼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사건 당시에는 10점 만점에 6점, 현재는 7점으로 1점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였지만 바로 이 점이 태도 변화의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는 없었으며 충돌을 줄이고 이해하며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사 실 혼 ②

●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Q 결혼 1년 후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 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귀하가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배우자이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

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해안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 두 사람의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예비군 또는 전시근로에 동원된 사람이 작전명령에 의해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동법 제4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제 부모님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셨고, 10여 년 전에 두 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남동생은 선천적으로 발달장애를 앓아왔고,

2018년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 누나인 제가 남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가 남동생의 수급비 지급 통장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 전 언니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언니는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도 없습니다. 언니의 유일한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인데 상속재산 조치를 해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다른 친인척들에게까지 언니의 채무로 인해 폐를 끼치는 일이 없고자 합니다. 제가 남동생의 후견인이므로 남동생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되나요?

A 성년후견인인 귀하의 피성년후견인 남동생에 대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성년후견개시결정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후견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상 대리권등목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리권 목록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그 제한의 내용으로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 단독으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8조, 제956조, 제918조 제4항, 제2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5). 귀하는 남동생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대리하기 위하여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의 소감을 싣는다.

이 지 호

여름방학동안 의미 있는 봉사활동과 사회경험을 하고 싶어, 65년의 법률구조 역사를 가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수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설렘과 기대감과 긴장을 갖고 상담소에 들어왔습니다. 연수 첫 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소장님 이하 상담소 선생님들께 상담소 인턴지원 소감과 각오를 이야기하며 약간의 긴장도 되었으나,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날 상담소의 활동 역사에 관한 영화와 이혼과 가정폭력 관련 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상담소에서 제가 접하게 될 일들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법 강의를 듣고 전화상담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기록하며 많은 정보를 노트를 적으며 첫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상담소의 업무과정을 배우고 익히며, 선생님들께서 법률의뢰서 및 소송관련 보정서 작성 과제를 주셨고, 처음 작성해 본 의뢰서라 많이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 들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를 바랐습니다. 다양한 영어 상담의 번역, 다문화가정상담의 통역 업무를 하고, 법률구조의뢰서 작성을 며칠씩 하다 보니, 점점 일에 적응하게 되었고, 상담소 일이 재밌어졌습니다. 처음에 왜 긴장을 했었는지 제 자신에게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밖에 지나지 않은 듯하였으나, 벌써 상담소에 있는지 2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많은 상담소 업무를 도울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셔서 정해진 시간안내 업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상담 참관, 라오니 모임, 등지 교실 등, 많은 가정의 어려운 사연들을 직접 듣고, 목격함으로써 제가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경험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을지가 상담소를 떠나기 전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과 연수를 마치며 과제였습니다. 상담소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문적이고 상담소의 다양한 업무들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상담소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계적이고 협동심, 전문성이 가득한 조직적인 생활 속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도움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수와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의 삶을 더 낫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고통으로 통제하는 법들을 어떻게 개정하고, 그분들을 위한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담소에 함께 남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 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거의 이십년 전 즈음, 유학 중 이던 친구가 자신의 싸이월드를 보라고 알려 주었다. 초창기여서 그랬는지 가입자가 아닌 나도 친구의 싸이월드는 물론 연결 연결된 많은 이들의 싸이월드를 방문할 수 있었다. 별 신선놀음도 아니었는데 도끼자루 썬 줄 모르고 몇 시간을 안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연락이 끊어진 많은 이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조금은 지겹고 적잖이 끔찍해졌다. 관음과 노출의 대합작 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후로 나는 어떠한 SNS도 하지 않게 되었다. 웹툰을 보기 위해 만들었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많은 초등학교생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스피커 과잉의 시대이고 관음과 노출은 상호작용하며 더 거대해지고 이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관심과 주목이 돈과 권력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provoke는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다 그리고 화나게[짜증나게]하다, 도발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프로보커터'는 '도발 provoke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과 글과 영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도발하여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확보한 세간의 주목을 밀천 삼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설명에서 연상되는 바로 현재 우리 사회의 몇몇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프로보커터를 분석하는 책이다. 책은 2017년부터 정치적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싱가포르 출신의 21세 청년 아모스 이가 자유와 저항의 아이콘에서 페도파일의 대변인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오로지 주목과 관심에 중독된 이들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 즉 주목 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거쳐 이른바 최근에 유행하는 '선을 넘는' 위반의 문화 정치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결국 사유조차 외주화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프로보커터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 인물들에 대한 분석으로 마무리한다. '프로보커터들의 프로보커터라는 진중권', '게으른 혹은 무능한 프로보커터 서민' 그리고 '공정한 편파가 감춘 정치 종족주의 김어준'에 이어 태극기 코인과 반페미 코인의 혼종인 우파번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조인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수놓은 오피니언 셀럽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유는 고된 일이다. 사유를 남이 대신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한 편이라도 더 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현대인은 사실상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먹방'은 양질의 식사를 남이 대신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캠방'(게임방송)은 놀이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비디오게임을 직접 즐기 않고 캠방 시청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늘면서 게임 업계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심지어 짭짤한 리뷰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영화 관람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대중이 시사 비평 유튜브 방송을 소비하는 양상은 '사유의 외주화'의 전형을 웅변한다."(본문 70쪽)

이 책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992년 생 김내훈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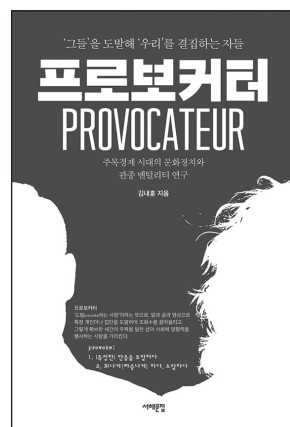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

프로보커터

주목시대의 문화정치와
관중 멘탈리티 연구

김내훈 지음

서해문집, 20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족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복리를 기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 동성동본 금혼 및 호주제 폐지 등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민법에서 완전한 부부평등, 자녀의 복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본소 가족법개정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의하면 ‘우리 민법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인지란 생부의 의사표시에 의해 혼인외의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나 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를 법적인 부자관계로 형성시키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혈연의 진실 외에 자녀의 복리나 다른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민법 제정 당시 우리 사회의 부계혈통 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부계혈통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오늘날의 가족법체계와는 더 이상 조화되기 어렵다. 자녀와 모의 동의를 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생부로서는 인지가 다소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까지 생부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던 규정체계를 자녀와 모의 복리를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소에서는 이러한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공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으며, 현안도 산적해 있고 사회 전반에 온라인 회의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미리 예약을 한 상담소 회원들 이외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화상회의(ZOOM)로 실시간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이었으나 미혼모관련 시설, 전국 위기임신지원센터, 연구기관, 대학(교수, 대학생), 가정폭력상담원교육원 관계자 등 인지와 관련해 관심 있는 이들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 다수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본소는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이 보다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협의회 가져

6월 17일 본 상담소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의 구체적인 시행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세희 법률지원단장과 안미경 법률지원단 차장,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상담통계

총 건수 5,763			
법률상담 (4,924)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1,080	3,764	78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98	92	149	

• 인터넷 정보 이용 24,018

2021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76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924건(85.4%), 화해조정 598건(10.4%),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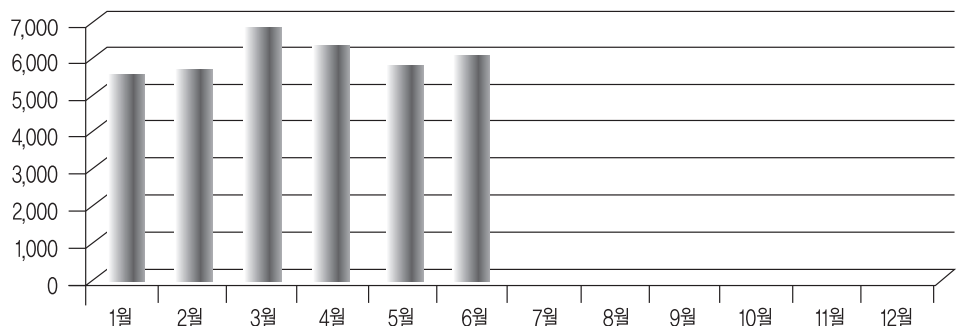
장 등 서류작성 92건(1.6%), 소송구조 149건(2.6%)이었다.

법률상담 4,92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5%), 부부갈등(3.9%→4.1%), 이혼(22.8%→25.0%), 사실혼해소(1.0%→1.2%), 친권·양육권(5.5%→5.9%), 양육비(8.1%→8.5%), 인지(1.1%→1.2%),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5%→0.7%), 성변경(0.9%→1.3%), 미성년후견(0.8%→1.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

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6%), 파산(2.7%→2.9%), 민사절차(0.1%→0.3%), 개인회생(0.3%→0.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 형사절차(0.2%→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92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80건(21.9%), 전화상담 3,764건(76.4%), 인터넷상담 78건(1.6%), 지상상담 2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6.30 여수시건강가정지원다문가족통합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법률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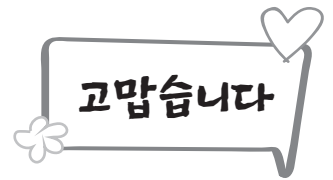
- (4.26~8.31) 조주현
(5.17~6.15) 이지호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2일과 16일 서울가정법원 이혼사건 조정에 참여하였다. 10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회의에 참여하였고, 18일에는 가족법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18일 기재부 예산설명회의에 김현옥 재무과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10일에는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양성교육과정에서 “가족법의 변화 그리고 가정폭력”을 주제로 zoom 온라인강의를 하였다. 18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 ·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zoom 회의)에 참여하였다.



2021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심미숙, 이승주, 황미옥, 천정환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광수, 김민지, 김선경, 김수정, 김유정, 김준호,
김지우, 김지윤, 김혜원, 김효진, 류지원, 문예빈,
박지희, 봉수빈, 예성은, 오지현, 윤채은, 이상은,
이성주, 이송현, 이시현, 이연걸, 이용안, 이용진,
이주연, 임지윤, 장선우, 장성윤, 전우인, 전우정,
전해웅, 정채연, 조예람, 조예진, 최세은, 최예진,
한봄이, 한승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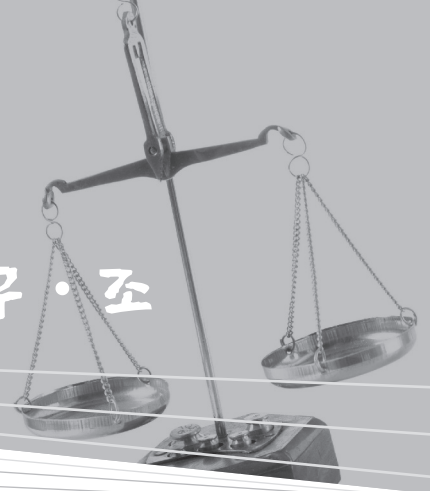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정민영, 이주연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408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8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을 두었으나, 2013년 6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채무자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에 소홀하였고 사건본인들은 채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채무자의 무책임한 양육태도를 알고 있던 채무자의 가족들도 채권자를 도와 사건본인들이 채권자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채권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커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16.)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의처증과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과의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0-448

담당 : 박성룡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61세)는 1987년 8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술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자주 붙었고 그 때마다 망치로 살림을 부서 이웃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원고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을 때면 폭력을 일삼았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해지자 피고는 술을 먹지 않고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6년 전 집을 나온 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2020년 1월경 원고는 건강이 악화되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인천가정법원 2021. 2.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병원비가 부족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678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팔과 한쪽다리가 마비된 친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병간호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신청인이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뒤 친부마저 중증도 이상의 치매를 앓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겼다. 신청인은 이전에 부담하던 병원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여 병원비를 충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채무를 지면서까지 부모님을 모시며 건강이 회복되길 염원하였지만, 몇 년 후 부모님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조금씩 월 변제를 하던 중 권고퇴직을 당하면서 변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취직이 어려워 일용근로를 하면서 변제금을 마련하였는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해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일용근로를 그만두고 협심증시술을 받고 건강회복을 위해 요양하였다. 이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취직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결국 개인워크아웃이 실패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72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8세)은 2009년경 배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설비비, 물품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배달원들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치리비용 등이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채무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신청인은 결국 2012년경 본인 명의의 부동산까지 경매로 처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나빠져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으나 일거리가 많지 않아 소득이 저조하였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평균 5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발생한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재량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800

담당 : 전해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2세)과 피신청인(여, 30세)은 2011년 8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7세, 5세)을 두었으나 2018년 12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45만 원을 매월 16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1년 전부터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1. 4. 2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울산가정법원 2018호협0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8. 12. 19.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8,9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5개월간 월 1,78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대한 인지신고는 거부하였다. 2017년 10월경 원고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피고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2. 11)

1. 사건본인들은 각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6,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9. 10. 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월 737,1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혼외자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면서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9-333

담당 : 오화섭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45세)는 2009년경 피고(남, 44세)를 만나 슬하에 사건본인1(여, 5세), 사건본인2(남, 4세)를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여 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1 출생 후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포기,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사건본인들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20-487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26세)와 피고(남, 41세)는 2018년 2월경부터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여, 2세)을 임신하게 되었다. 원고가 임신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고 함께 키우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신기간 중 집을 나갔고, 홀로 사건본인을 출산하기 어려웠던 원고는 미혼모시설의 도움으로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 후 피고의 가족들은 아이를 왜 낳았냐는 원망을 하였고, 피고와는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건본인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하여 백내장 수술 등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안과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장애가 있

지만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어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인 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5. 28.)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이 종전의 성 “○”와 본 “◇◇”를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와 폭행을 일삼고 주벽으로 인한
배설물을 치우게 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43

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베트남 국적을 가진 원고(여, 25세)는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피고(남, 49세)를 만났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2018년 4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혼인 후 3개월 정도만 일을 하였고, 그 후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매일 7, 8병의 소주를 마셨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구토하거나 바지에 대변을 보기도 했는데 이런 토사물과 대변은 원고가 치워야 했다. 피고는 습관적으로 원고에게 욕을 하였고, 원고를 폭행하여 경찰이 2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언 및 폭행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는 본인의 주소가 피고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4.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733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4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2년 9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7세, 여 12세)을 두었으나 2016년 6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을 매월 15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키우겠다고 협박을 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호협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6. 13.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1. 6. 30.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1,4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2021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8월 휴강, 9월 13일, 9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시	강의 제목
9월 23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10월 28일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7월 8일	정신건강의 중요성 -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는 노력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9월 9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1년 8월 / 10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1년 8월/10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패 없는 땅에서 청렴이라는 꽃이 핀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